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

2026년 11월 13일

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1호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유아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

2.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유치원 교직원 교육·연수에 관한 사항

4.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교육과정 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·교구의 개발과 보급,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및 그 밖의 교수·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교직원 연수 등)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,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

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